

채권양도계약서(ESCO매출채권 팩토링용) 개정 대비표

1. 주요 개정내용

구 분	현 행	개 정(안)	비 고
약정서명	채권양도계약서(ESCO매출채권 팩토링용) (구 외환은행)	채권양도계약서(ESCO매출채권 팩토링용)	전산통합에 따라 약정서명에 (구 외환은행) 명칭 삭제
약정서 內 타 약관명	매출채권(팩토링)거래 약정서(구 외환은행)	매출채권(팩토링)거래 약정서	전산통합에 따라 타 약관명 변경내용 반영
제1조 피담보채무의 범위	은행은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<u>세 유형</u> 가운데 어느 하나를 채권양도인이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, 채권양도인은 그 가운데 특정근담보 에서 정한 채무(이자,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한다)를 담보하기로 합니다.	은행은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<u>두 유형</u> 가운데 어느 하나를 채권양도인이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, 채권양도인은 그 가운데 특정근담보 에서 정한 채무(이자,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한다)를 담보하기로 합니다.	문구 정비
제3조 담보가치의 유지	양도인은 공사의 부실·납품의 불합격 등 양도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은 경우는 물론 불가항력·사변·재해·소송도중의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은행이 양도채권 전액을 수령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, 곧 은행에 이를 통지하고 부족금에 관하여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변제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합니다.	양도인은 공사의 부실·납품의 불합격 등 양도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채권자가 제1조의 양도채권 전액을 수령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, 곧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부족금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지시에 따라 곧 변제하거나 상당액의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합니다.	불가항력, 사변, 재해, 소송도중의 사고로 인한 사유 삭제(공정위 및 금감원의 변경 권고사항 반영)

2. 개정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
3. 기 거래고객에 대한 적용 : 개정된 내용은 개정일 이후 신규, 연장 등 약정분부터 적용